2024년도 X차
규칙개정

개정제안서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 도입을 위한 규칙개정(안)

제 안 번 호	제 X 호 (제2024-X호)
제 출 자	전력거래소
제출년월일	2024. X. X.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제안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력시장운영규칙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1. 개정 필요성

□ **(배경)** 최근 비중앙급전 설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중

< 2001-2023년 발전설비 현황 비교 (출처 : 한국전력통계, EPSIS) >

구 분	2001년			2023년		
	중 앙	비중앙	합계	중 앙	비중앙*	합계
호기 수	222	157	379	419기	131,936기	132,355기
(비 중)	58.6%	41.4%	100%	0.3%	99.7%	100%
설비용량	50.6GW	0.3GW	50.9GW	113.6GW	30.8GW	144.4GW
(비 중)	**99.4%**	**0.6%**	**100%**	**78.7%**	**21.3%**	**100%**

* 비중앙(시장+PPA) 중에서도 “1MW 이하 태양광이 13만개(19GW)”로 대부분을 차지

□ **(문제점)** 특히 변동성 재생e(太, 風 등)이 지역 편중적 보급으로 인해 송전제약 및 경부하기(봄·가을철)공급과잉에 따른 문제 심화

ㅇ 이에 대한 대책으로 ‘23년부터 일부 비중앙급전 대상으로 출력제어를 시행 중이나 일부 사업자에게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ㅇ 출력제어 시에도 별도 보상이 없어 제어에 협조적인 사업자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 지역편중 설비보급에 따른 계통 문제상황 >

호 남 (대표사례)	ㅇ**(현황)** 원전(한빛#1~6호) 5.9GW, 태양광 8.8GW(전국 대비 42%) - 지역 內 발전용량 대비 타지역 전력인출용 송전선로(345kV)는 2개에 불과 ㅇ**(이슈)** “低수요 高공급” 봄·가을철 경부하기 주간시간대 → “①지역 전력수요 + ②타지역 송전가능용량 < 지역 발전량”의 과잉발전력 발생, 호남·수도권 융통선로 등 주요선로 고장시 전국 계통불안정 우려

□ **(필요성)** 이에 비중앙급전 설비도 계통신뢰도 유지에 기여토록 하는 한편, 출력제어 이행에 대한 재무적 형평성을 마련할 필요

ㅇ 비중앙급전 출력제어에 참여한 사업자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에 기여하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기회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ㅇ 보상 비용은 전체 비중앙급전 설비에 대해 부과함으로써 공급과잉 억제 및 급전 자원화를 유인하고자 함

2. 개정 내용

□ **(기본방향)**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를 통해 출력제어에 참여하는 경우 보상을 지급하고 그 비용을 전체 비중앙급전 설비가 분담하는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도입

< 비중앙 유연성 서비스 기본방향 >

① 비중앙의 유연자원화	② 경부하기 계통안정	③ 비용분담
· 비중앙급전 설비의 자발적 유연성 자원화 유도 · 출력제어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손실이 없도록 별도 보상 제공하여 출력제어 협조 유인 제고 및 민원소지 해소	· 재생e 발전 과공급으로 인한 계통불안정 문제 해소 · 비중앙급전설비 포함 전력계통의 전반적인 통합관제 체계 확대 기반 마련	· 가격입찰제(재생e 입찰제)의 음(-)의 가격과 유사한 과도기적 제도 마련 · 비용분담을 통하여 비중앙 급전설비에 대한 급전자원화를 유인

□ **(참여대상)** 전력시장 참여 500kW 이상 비중앙급전발전기(연료원 무관)

ㅇ 반기(봄 · 가을철) 각1회 모집(설비용량)

ㅇ 모집에 지원한 사업자는 최소 기술적 요건을 충족한 경우 확정

□ **(시행절차)** ❶계약단가 산정 → ❷모집공고 → ❸출력제어 참여자원 모집 → ❹확정된 발전기와 계약체결 → ❺시간대별 전력계통 · 수급여건에 따라 출력제어 시행 → ❻운영기간 종료 후 제어이행량 산정, 정산

□ **(활용방안)** 계약발전기 대상 일별 · 시간대별 제어필요물량 제어 시행

○ 제어 우선순위는 ❶계약요금* 순(보상수준 低 → 高, 경제성)을 원칙으로 하되, ❷제어 필요시점의 계통현황**, ❸기술능력 등을 고려하여 제어 시행

* 계약요금 : "SMP + REC(×가중치) - GP"(≒출력제어 이행 기회비용) 수준으로 산정

** 효과적인 출력제어를 위해 제어권역을 수도권-비수도권으로 구분

□ **(정산방식)** 계약발전기별 제어이행량을 계약요금 정산단가로 정산

○ 모집공고별 거래기간 종료일로부터 M+3개월 내 정산 및 결제

○ 제어 필요권역(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송전제약 사유 제어는 권역별 정산

□ **(비용분담)** 제어사유 · 제어권역(수도권-비수도권)에 해당되는 비중앙급전 및 시장외 거래자원 등이 제어발생 시간대의 개별 발전량에 비례하여 분담

< 제어사유에 따른 비용분담 방법 >

제어사유	비용분담
수급불균형	전체 비중앙급전 설비가 분담
송전제약	송전제약 해소를 위한 제어권역별 비중앙급전 설비가 분담

○ 비중앙발전기의 발전량 과잉공급에 따른 출력제어 문제 해소비용은 全 비중앙발전기와 판매사업자*가 부담

* 판매사업자는 한전PPA, 제3자PPA 등 설비의 발전량에 대한 비용을 분담

3. 개정 효과

□ **(시장측면)** 低가격순 제어원칙으로 제도 효율성 확보, 시장원리에 따른 사업자간 제어형평성 등 기대

□ **(계통측면)** 실시간 유연성 확보, 출력제어 효율성 향상, 통합관제체계 고도화 등의 긍정적 효과 기대

2024년 7월 5일

제 안 자 성 명 : 전력거래소 정동희
주 소 :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화번호 : 061-330-8470 (실시간시장팀 김형철 팀장)

붙임 :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붙임】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4. “급전지시”라 함은 전력거래소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중앙급전발전기 및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와 수요반응자원을 운영하는 수요관리사업자 및 송전사업자용 전기저장장치를 운영하는 송전사업자에게 지시하는 행위를 말하며, 전력계통 비상상황 시에는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운영사업자에 대해서도 지시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급전지시는 “전력수요 의무감축요청”이라 한다.	**제1.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략) 44. "급전지시"란 함은 전력거래소가 정상 또는 비상상황에서 전력수급의 균형유지 및 전력계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등 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급전시지 정의를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과 정합성 유지
제1.1.3조(적용 범위) ③ 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는 이 규칙 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3조(적용 범위)** ③ 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로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에 연결된 전기설비를 운영하는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설치자, 전기신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는 이 규칙 제5장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전기신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계통운영기준 적용

개 정 (안)	비 고
제5장 전력계통 운영 **제12절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 (신설)** **제1관 통칙** **제5.12.1.1조(목적)** 이 절은 법 제27조의2 및 제45조에 의거 전력거래소가 계통의 신뢰도 유지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비중앙급전발전기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는데 있어 효율적이고 형평성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도 도입취지 명시
제5.12.1.2조(용어의 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이하 ”비중앙 유연성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비중앙 유연성자원이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출력제어를 이행토록 하여 하향 유연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비중앙 유연성자원”이라 함은 전력거래소와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비중앙급전발전기를 말한다. 3.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제어이행량(이하 ”제어이행량“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에 따라 급전지시를 이행한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거래시간별 발전감축량을 말한다. 4. “제어이행실적”이라 함은 거래시간별 전체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제어이행량 합계를 말한다. 5. “제어권역”이라 함은 수급균형 및 송전망의 안정운영 등 전력계통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비중앙 유연성서비스가 필요한 권역을 말하며, 제어권역의 구분은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모집공고에 명시된 바에 따른다.	· 용어의정의 추가

개 정 (안)	비 고
제5.12.1.3조(적용 범위) 이 절은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중앙급전발전기,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적용대상 설정
제5.12.1.4조(비중앙 유연성자원의 의무) ① 비중앙 유연성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운영과 관련한 전력거래소의 자료요구 등이 있을 때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계통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급전지시가 필요한 경우 비중앙 유연성자원에게 급전지시를 할 수 있으며, 비중앙 유연성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비중앙 유연성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실시간 계량자료 취득 상황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각종 필수 데이터가 전력거래소로 원활히 전송되도록 한다. ④ 비중앙 유연성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숙지하여야 하며, 의무를 미이행 하는 경우 제5.12.2.7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 해지가 될 수 있다.	· 참여의무 명시
제2관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참여	
제5.12.2.1조(운영기간) 비중앙 유연성서비스의 연도별 1차 운영기간은 매년 3월 첫 번째 날부터 8월 마지막 날까지, 2차 운영기간은 9월 첫 번째 날부터 다음해 2월 마지막 날까지로 정한다.	· 제도 운영기간 명시
제5.12.2.2조(참여요건)①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참여대상은 제1.2.4조제2항에 따라 비중앙급전발전기로 등록된	· 참여요건 명시

개 정 (안)	비 고
자원으로 한한다. ② 비중앙 유연성서비스의 참여를 위한 기술요건 등의 세부사항은 제5.12.2.3조의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전력거래소는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이전 차수 운영기간에서 제5.12.2.7조 제1호에 의해 계약해지가 되거나, 과거 모집공고에서 참가제한을 받은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해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제5.12.2.3조(모집공고) ① 전력거래소는 비중앙 유연성자원 선정을 위한 모집공고를 모집개시일 3일 전까지 전력거래소 홈페이지 등에 공지한다. ② 모집공고에는 제어권역, 기술요건, 자원 선정방법, 모집기간, 계약조건, 참여제안서 등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참여자원 모집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모집공고 절차 명시
제5.12.2.4조(참여제안서의 제출) 비중앙 유연성서비스에 참여 의사가 있는 발전사업자는 제5.12.2.3조 제2항의 모집기간내에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참여제안서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제도 참여방식 명시
제5.12.2.5조(참여제안서의 내용) 제5.12.2.4조에 의하여 제출하는 참여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발전기 일반사항 및 기술적 특성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설비용량(MW) 2. 최소발전용량(MW) 3.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RPS 설비확인증) 및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서 4. 발전차액지원제도 기준가격 증빙자료	· 참여제안서 세부내용 명시

개 정 (안)	비 고
5. 발전원 종류, 발전기 소재지역, 계통연계점 및 발전기코드 포함 기타 제어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	
제5.12.2.6조(계약조건 및 계약관리) ①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계약은 비중앙 유연성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와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가 체결한다. ② 비중앙 유연성서비스의 계약기간은 제5.12.2.3조의 모집공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③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계약가격은 제5.12.2.5조의 각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참여제안서 자료를 바탕으로 결정하며, 비중앙 유연성자원이 해당되는 발전원 종류 및 발전기별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④ 비중앙 유연성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계약서에 명기된 일정 및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동안 계약조건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계약조건 및 계약관리 기준 명시
제5.12.2.7조(계약해지) 전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이 비중앙 유연성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와의 신뢰가 훼손되거나 계약의 이행 혹은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비중앙 유연성자원이 제5.12.1.4조의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여 3회 이상의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는 경우 2. 비중앙 유연성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가 제5.12.2.6조의 계약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3. 비중앙 유연성자원이 제5.12.2.1조의 운영기간 중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기타 모집공고문에 명시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의 무효처리 혹은 해제·해지가 필요하다 판단되는 경우	· 계약해지 기준 명시
제3관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운영	

개 정 (안)	비 고
제5.12.3.1조(운영기준) ① 전력거래소는 전력계통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비중앙 유연성자원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를 할 수 있다. ② 전력거래소는 비중앙 유연성자원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세부운영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세부운영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비중앙 유연성자원 제어대상 우선순위(제어순서) 결정방법 2. 비중앙 유연성자원 제어량 산정방안 3. 비중앙 유연성자원 제어절차 및 제어방식 4. 비중앙 유연성자원 제어지시 이행여부 확인 및 절차 등 5.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 산정방안 6.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 산정방안 7. 기타 비중앙 유연성자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	· 제도 세부운영기준 명시
제5.12.3.2조(제어이행량 평가) ① 전력거래소는 제5.12.2.1조의 운영기간 동안 비중앙 유연성자원이 제공한 거래시간별 제어이행량을 운영기간 종료 후 제5.12.3.1조제2항의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제어이행량 데이터를 제5.12.4.1조의 정산 기준 자료로 사용한다.	· 제어이행량 평가기준 명시
제5.12.3.3조(판매사업자의 정보 제공) ① 판매사업자는 제5.12.2.1조의 운영기간 종료 후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을 제5.12.3.1조제2항의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판매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 명시

개 정 (안)	비 고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판매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제5.12.4.1조 및 제5.12.4.2조의 정산 기준 자료로 사용한다.	
제5.12.3.4조(계량데이터 기준) 전력거래소는 제5.12.2.1조의 운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취득된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계량데이터를 제5.12.4.1조 및 제5.12.4.2조의 정산 기준 자료로 사용한다.	· 계량데이터 적용기준 명시
제4절 정산	
제5.12.4.1조(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이행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제5.12.2.1조의 운영기간 동안 비중앙 유연성자원이 제공한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제어이행량에 대한 이행정산금을 별표2에 따라 5.12.2.1조의 운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산정한다. ②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이행정산금을 운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월의 마지막 거래일 정산명세서에 반영한다.	· 이행정산금 산정절차 명시
제5.12.4.2조(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비용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제1.2.4조제2항에 따른 비중앙급전발전기,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직접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에 대해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비용을 부과한다. ②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비용정산금은 제5.12.4.1조에 따라 산정된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이행정산금 총액을 제1항의 부과대상 발전기의 이행실적이 발생한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 값으로 한다. ③ 제2항의 정산금은 별표2에 따라 5.12.2.1조의 운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 산정한다.	· 비용정산금 산정절차 명시

개 정 (안)	비 고
④ 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정산금을 운영기간 종료일 익익월 마지막 거래일 정산 명세서에 반영한다. ⑤ 제1항의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정산금은 판매사업자의 정산 명세서에 반영한다. **제5.12.4.3조(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정산명세서)**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정산명세서 및 거래대금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제4.2.5.1조 내지 제4.2.5.7조에 따른다. 다만,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이행정산금 및 비용정산금에 대한 정산시점은 운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월의 마지막 거래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x.x.x.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장제12절(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 첫 번째 운영개시일은 제5.12.2.3조의 모집공고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 **제3조(비중앙 유연성서비스 경과조치)** ① 제16.1.4조 3호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도입된 제주 지역에 대해서는 제5장제12절의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육지 지역으로 확대되는 시점에 제5장제12절의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의 적용 여부를 규칙개정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결정한다. ③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의 직접전력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및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에 따라 해당 계약을 체결한 비중앙급전발전기에 대해서는 전력거래소가 별도로 정하여 공지하는 시점까지 제5장제12절의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 비용정산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정산시점 명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별표 2] 정산 기준 [목차]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 17. 생략 <신 설> (중략) Ⅲ.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 ~ 8. 생략 <신 설>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별표 2] 정산 기준 [목차]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1. ~ 17. 생략 18.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산 가. 이행정산금에 대한 정산 나. 비용정산금에 대한 정산 (중략) Ⅲ.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1. ~ 8. 생략 9.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산 Ⅰ. 발전사업자에 대한 정산	· 발전사업자 정산 항목 추가 · 판매사업자 정산 항목 추가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중략) <신 설>	(중략) 18.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산 가. 이행정산금에 대한 정산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 이행정산금은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제5.12.2.1조의 운영기간 동안 제5.12.3.1조제3항제2호의 산정 방안에 따라 제어이행량이 산정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과 같이 정산한다. $GOCP_i = \sum_{z} \sum_{t}^{\text{운영기간}} GOCP_{i,z,t}$ $GOCP_{i,z,t} = GOCQ_{i,z,t} \times GOCCP_i \times 1{,}000$ $GOCP_{i,z,t}$(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Payment):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해당 제어권역에 대한 거래시간별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이행정산금(원) $GOCQ_{i,z,t}$(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Quantity):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해당 제어권역에 제공한 거래시간별 제어이행량(MWh) $GOCCP_i$(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Contract Price):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계약가격(원/kWh) 여기서, 해당 제어권역(z)이라 함은 수급균형 및 송전망의 안정운영 등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하여 비중앙 유연성서비스가 필요한 상황에서 급전지시에 영향을 받는 권역을 의미하며, 모집공고에서 명시된 권역을 기준으로 상황에 따라 1개 이상의 권역이 적용될 수 있다. 나. 비용정산금에 대한 정산 비중앙급전발전기의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 비용정산금은 제5.12.2.1조의 운영기간 동안 제5.12.3.1조 제3항제2호의 산정 방안에 따라 산정된 비중앙 유연성서비스의 제어이행실적이 있는 시간대 및 제어권역의 비중앙급전발전기를 대상으로 제5.12.3.3조의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규정에 따라 판매사업자에게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GOCC_i = \sum_{z} \sum_{t}^{\text{운영기간}} GOCC_{i,z,t}$ $GOCC_{i,z,t} = \sum_j GOCP_{j,z,t} \times \{(MGO_{i,t} + GOCQ_{i,z,t}) / \sum_j (MGO_{j,z,t} + GOCQ_{j,z,t} + \sum_j GOCTS_{j,z,t})\}$ $GOCC_{i,z,t}$(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Charge): 발전기의 해당권역에 대한 거래시간별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비용정산금(원) $GOCP_{i,z,t}$(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Payment): 비중앙 유연성자원의 해당 제어권역에 대한 거래시간별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이행정산금(원) $GOCQ_{i,z,t}$(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Quantity): 개별 비중앙 유연성자원이 해당 제어권역에 제공한 거래시간별 제어이행량(MWh) $MGO_{i,z,t}$: 해당 제어권역 비중앙급전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계량전력량(MWh)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GOCTS_{i,z,t}$(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of Traded energy through Sales company):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제어이행실적 시간대에 대하여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별 해당 제어권역의 거래시간별 전력거래량(MWh)	
(중략)	(중략)	
Ⅲ.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Ⅲ. 판매사업자에 대한 정산	
(중략)	(중략)	
	9. 비중앙급전발전기 자발적 유연성제공서비스에 대한 정산	
	제5.12.4.2조제5항에 따라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정산은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비용정산금 총액을 대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신 설>	$TGOCCS = \sum_{i}\sum_{z}\sum_{t}^{\text{운영기간}} GOCCS_{i,z,t}$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한 발전기의 발전기별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비용정산금은 다음과 같다. $GOCCS_{i,z,t}$ $= \sum_{j} GOCP_{j,z,t}$ $\times\{ GOCTS_{i,z,t} / \sum_{j}(MGO_{j,z,t} + GOCQ_{j,z,t} + GOCTS_{j,z,t})\}$ TGOCCS(Total 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Charge for Sales company): 판매사업자에게 적용할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비용정산금(원) $GOCCS_{i,z,t}$(Generation Output Control service Charge for Sales company): 판매사업자와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기, 제3자간 전력거래 계약을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체결한 해당 제어권역의 발전기별 거래시간별 비중앙 유연성서비스 비용정산금(원)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7.0 절차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정산계좌 등록·변경 및 채권양도 등** (중략) <신설>	[별표8] 정산 및 결제 절차 7.0 절차 **7.11 전력거래대금 결제, 정산계좌 등록·변경 및 채권양도 등** (중략) 7.11.1.5 전력거래소는 7.11.1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5장 제12절 비중앙 유연성서비스의 정산금은 제5.12.2.1조의 운영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후 7.12 (정산 및 결제 일정표)의 4차에 총괄하여 반기 1회 지급한다.	